

개인형IRP 수수료율 인하 안내

항상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당사 퇴직연금수수료 중 개인형 IRP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.

- 시행일: 2017년 09월 28일(목)
- IRP 수수료 인하 : 개인적립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0%
- IRP란?
 -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
 - 노후대비, 세액공제 등을 목적으로 납입한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
- IRP 가입대상자 및 절세 혜택
 - 가입 대상자
 - 퇴직연금제도(DB, DC) 가입자
 - 자영업자
 - 공무원, 군인, 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
 -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(1년 미만 근로자 등), 퇴직금제도 근로자
 - 절세혜택

IRP	세액공제율	절세 예상액
	연 700만원 한도 13.2% 세액공제 (저소득자 16.5% 세액공제)	924,000원 (최대 1,155,000원)

* 저소득자(16.5%) 기준: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 4,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